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96

발의연월일: 2025. 5. 23.

발 의 자:유용원·이헌승·조승환

김소희 • 임종득 • 신동욱

김미애 · 최형두 · 김재섭

배준영 · 조지연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방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하 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안보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매입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한편 현행법의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	①
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	
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	
(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	
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	
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u><삭 제></u>
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	
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	
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	
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	
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지역</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